



청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에 채용이 예정돼 있다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부당하지 않다

사건번호 대법 2000두2389

판결요지

원고들이 그 채용 당시 ○○광역시에서의 근속년수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나 원고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당시 소외 공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원고들이 「공사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지방공무원이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직을 퇴직하고 개별적으로 공사 등에 입사함으로써 기존의 부처에서 근무하였던 근속 년수가 공사화된 기관에서의 근속 년수와 통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 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원고들은 ○○광역시 공무원직에서 퇴직하면서 소외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시험에 개별적으로 응시, 합격하여 채용된 것으로써 그 채용 당시 ○○광역시에서의 근속년수 를 인정받지 못하였고, 원고들이 명예퇴직을 신 청한 1998. 5월경에는 소외 공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공무원법(1998. 9. 19 법률 제5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2 제1항, 제2 항에서 명예퇴직 수당지급 근속연수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임을 받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1998. 10. 10 대통령령 제1591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은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를 들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존의 부처에서 근무하

던 공무원이 새로운 법령의 제정 등에 의하여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으로 포괄승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채용하더라도 채용되기로 사실상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퇴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이 설립되는 것이 확실하고 그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것이 분명하다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설립 시기가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보다 다소 앞서거나 뒤라는 사정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장은 1998. 3. 17 피고에게 이미 확보된 지하철건설본부 운영기획단 소속 직원 33명 중 장차 설립될 소외 ○○광역시 지하철 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운영기획단장인 원고 윤○○을 포함한 26명 외에 ○○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외 공사 전출희망자 17명을 파견 전입받아 공사직제 및 인사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소외 공사의 인사위원회나 이사회를 거쳐 소외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하니 소외 공사의 창립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파견하여 달라고 건의하자, 피고는 장차 설립될 소외 공사 파견 근무 대상자 선발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산하 공무원에게 알려 파견근무 희망자를 조사하면서 공사설립 후 직원으로 우선적으로 채용됨을 고지하였고, 이에 원고 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파견근무희망원을 제출하였고,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거쳐 1998. 5. 21 소외 공사에 신규임용된 사실, 원고들은 1998. 5월경 명예퇴직을 하겠다면서 피고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8. 5. 21 원고들이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

는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을 하고 원고들이 일반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들은 모두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공사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이 그 채용 당시 인천광역시에서의 근속년수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나 원고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당시 소외 공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원고들이 「공사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4호의 입법취지를 그 판시와 같은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위 규정이 지방공무원이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직을 퇴직하고 개별적으로 공사 등에 입사함으로써 기준의 부처에서 근무하였던 근속년수가 공사화된 기관에서의 근속년수와 통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원고들은 ○○광역시 공무원직에서 퇴직하면서 소외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시험에 개별적으로 응시, 합격하여 채용된 것으로써 그 채용 당시 ○○광역시에서의 근속년수를 인정받지 못하였고, 원고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1998. 5월경에는 소외 공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